

**【별첨】**

**교습비 등 내역서**

□ 교습비

학원(교습소)명				파고다이롬독학재수학원				
구분	교습과정	교습과목	교습대상	반별정원	주 총교습시간 ① (하루 분 × 주 회)	월 총교습시간 ② (① × 주) ex) 주, 4주, 4.2주	분당단가 ③ (④ ÷ ②) 모소수올림 자리까지	교습비 ④ (② × ③)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200.50원	80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2	고등	30	850분 (170분×주 5회)	3,570분 (850분×4.2주)	196.08원	70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3	고등	30	850분 (170분×주 5회)	3,570분 (850분×4.2주)	176.47원	63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4	고등	30	850분 (170분×주 5회)	3,570분 (850분×4.2주)	156.86원	56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5	고등	30	850분 (170분×주 5회)	3,570분 (850분×4.2주)	137.25원	49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6	고등	30	850분 (170분×주 5회)	3,570분 (850분×4.2주)	98.04원	35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7	고등	30	850분 (170분×주 5회)	3,570분 (850분×4.2주)	39.21원	14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8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182.96원	73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9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165.41원	66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0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147.86원	59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1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112.78원	45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2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60.15원	24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3	고등	36	700분 (140분×주 5회)	2,940분 (700분×4.2주)	170.07원	50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4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100.25원	40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5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180.45원	720,000원
신규	보습·논술	고등16	고등	35	950분 (190분×주 5회)	3,990분 (950분×4.2주)	25.06원	100,000원

**공지사항**

- 구분(삭제, 신규, 변경 전, 변경 후) 표시 필수
- 교습과목, 반별 인원 등 자료 첨부
-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(상한)
  - 보습(초등 179, 중등 201, 고등 216), 논술(초등 196, 중등 211, 고등 216), **진학상담지도(500)**, **국어회(유아 187, 기타 236)**, 음악(초급 145, 중급 168, 고급 231), 무용(초급 152, 중급 163, 고급 185), 미술(초급 149, 중급 157, 고급180, 입시 204), 독서실(1개월(30일) 141,000원), 입시(102)
-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 금액 이상으로 등록신청 한 경우(★기준금액 :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)
  - 나. 교습비 조정기준 이하 등록 시에도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적 개별조정
- 변경등록 업무 불성실 신청 시 : 별도 '행정처분' 실시
  -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미보고 허위보고(제출)의 경우 : 10~35점 벌점 부과(1차 위반)
- 교습과목은 실제 운영(예정) 과목명과 일치하게 작성

□ 기타경비

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

- 실비 증명 자료(산출내역서, 수강생명부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매입전표 등)첨부
- 차량비 : 관련 법령에 의해 차량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차량비 인정 (유상운송 허가증, 통학차량신고필증, 안전교육이수증, 산출내역서, 운전자 및 보조탑승자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, 차량이용수강생 명부)
- 재료비 :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
- 모의고사비 :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비용(학원, 교습소 자체 제작 시험지 또는 프린트는 제외)
- 피복비, 급식비는 유아대상 교습학원 중 실비 징수 가능